

## 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송희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송희학원(강동대학교)의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송희학원(강동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 고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2. 학교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
계	-	-	-	


붙임 :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부. 끝.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송희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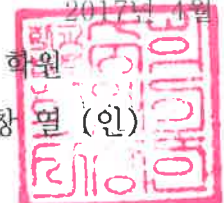
감 사 김세민 (인) 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5700호)

감 사 김은주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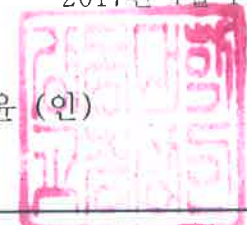
피감사 기관장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송희학원  
이 사 장 유창열 (인) 

피감사 기관장

2017년 4월 14일

강동대학교  
총 장 류정윤 (인) 

#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송희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희학원(강동대학교)의 2016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희학원(강동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송희학원(강동대학교)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송희학원

감사 김세민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5700호)

감사 김은주(인)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법인사무국직원

성명 이유빈(인)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사무처장

성명 김상덕(인)